

최정호. 2023. “공공급식에서 윤리적 채식선택권과 인권의 도전” 『인권연구』 6(1): 33-64.
Choi, Jeong-Ho. 2023. “A Right to Vegan/Ethical Vegetarian Meals in Public Facilities and Challenges to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1): 33-64.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1.33>

[일반논문]

공공급식에서 윤리적 채식선택권과 인권의 도전*

최 정 호**

한글초록

채식을 실천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누릴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며 채식을 까다로운 취향 정도로 보는 편견도 여전하다. 이런 현실에서 시민사회는 교정시설이나 학교에서처럼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채식 식단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채식선택권 내지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는 채식선택권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채식선택권은 양심을 형성하고 이를 실현할 개인의 인권으로서 보장된다.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념과 영양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채식선택권은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때 채식 선택은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선택이 가능한 조건에 관한 관심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적 이유에서 채식을 하는 이들의 소수자성과 그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구조적 부정의를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한편 비거니즘 등 윤리적 이유에서 채식선택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채식은 그 자체로 완전한 목적은 아니며 동물이나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기존 인권의 틀에서처럼 개인의 신념과 선택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채식선택권의 풍성한 내용은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되기 쉽다. 인류세, 기후위기, 팬데믹 등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고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반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인권은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권리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

* 유익한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연구조교수. 법학박사

를 감안한다면 인권이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또는 순전한 인간의 이익 관점만을 계속해서 관철할 것인지, 전자의 경우 그러한 인권의 근거, 동물 및 자연의 권리와와의 관계 등을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인권이 직면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채식선택권, 양심의 자유, 비거니즘, 비건법학, 동물권, 자연의 권리, 지구법학, 구조적 부정의

목 차

- I. 서론
- II. 윤리적 채식과 인권정치
- III.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 IV. 윤리적 채식선택권의 재구성과 인권의 과제
- V. 결론

I. 서론

최근 몇 년 사이 채식 급식을 제공받기 위한 헌법소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이 몇 차례 제기되었다.¹⁾ 각 청구인과 진정인들은 학교, 교도소, 군대와 같은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에서 채식 식단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중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은 각하되었고,²⁾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 사건 중 한 건에 대해

1) 한국과 외국의 다양한 사례는 박지현, 2021, “채식·비건·비거니즘 법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환경법연구』, 43(2): 127-154을 참조. 또한 채식·비건과 관련한 그린위싱 및 표시제도를 다룬 것으로는 박지현, 2023, “그린위싱·그린브러싱과 채식 - 채식·비건·비거니즘 법체계연구 II -”, 『홍익법학』, 24(1): 751-779를 참조.

서는 인용 결정이, 두 건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과 함께 의견표명이 이루어졌다.³⁾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채식 급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식탁의 소수자’인 채식 인구가 이제는 일상의 불편함을 인권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채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종교, 체질과 건강에 관련된 이유가 아니라, 축산업에 결부된 조직적 동물 학대와 그것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성에서 채식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적 이유나 건강 및 체질적 이유는 비교적 쉽게 존중받지만,⁴⁾ 그 밖의 사유는 까다로운 취향 정도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축산업 등 동물산업이 초래하는 폐해를 고려하는 채식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동물과 자연환경 같은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새롭게

2) 현재 2020.5.26. 2020헌마537에서 청구인들은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구인 중 교사는 자기관련성이 없었고, 반면 학부모는 자녀양육권을 근거로 그리고 학생은 재학 중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학부모라는 사실과 학생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고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현재 2020.6.9. 2020헌마543에서 청구인들은 윤리적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자들인데 공공급식에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인데 헌법에서 공공급식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않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각하되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4) 윤리적 신념에 따른 채식을 하는 이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식단을 피하려고 ‘한약을 먹는 중’이라거나 ‘유당불내증’이 있다는 등의 거짓 이유를 종종 제시하는데, 동물과 환경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립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때 채식선택권은 동물윤리나 환경윤리 실천을 인권의 틀로 주장한 것이어서, 우리 사회에 중대한 화두를 던지는 동시에 인권이론에도 진지한 물음을 남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윤리적 채식 이슈가 개인적 문제를 넘어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권 문제로 이행하는 최근 한국 사회의 흐름을 추적하며, 공공시설에서 채식선택권이 기존의 인권 유형으로 포섭되어 주장될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공공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나 공적 성격을 갖는 공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군대, 교도소, 구치소, 초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을 말한다.⁵⁾ 공공시설에서 채식인의 인권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흐름 가운데 특히 인권위가 내린 결정은 가장 진중한 응답이어서 집중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권위의 판단은 이 글의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권위는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양심의 자유 또는 ‘채식선택권’이라는 이름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임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개인의 선택 여지를 인정하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채식 인구가 소수자로서 배제되는 문제를 온전히 다루지 못했다. 또한 기존 인권 유형으로 포섭하는 것은 윤리적 채식, 즉 동물이나 자연에 대한 착취를 반대하며 인간-비인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채식을 신념과 선택이라는 개인화 된 문제로 축소한다는 점에서 풍성한 맥락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비거니즘과 같은 인간-비인간 관계의 성찰이 인권에 던지는 의미를 고찰하는 것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다.

5)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사기업의 구내식당이나 일회성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필요하다. 인권은 사인 간에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며, 법학적으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보호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이때의 인권은 존중의무를 넘어서 보호 및 실현 의무까지 개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될 공공시설에서의 채식선택권 문제에 집중하기로 한다.

II. 윤리적 채식과 인권정치

1. 채식의 이유와 윤리적 채식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려는 윤리적 채식이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세속적인 차원에서 채식하는 이유로는 크게 건강, 동물과 환경이 거론된다.⁶⁾ 이 중 건강은 육류나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비만이나 과단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병과 같은 건강상 해악을 경계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즉 채식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식의 주된 이유로 동물을 고려하는 것은 축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착취를 반대하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공장식 밀집 축산업에 내던져진 동물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 존재가 아닌 단순한 도구적 존재로 전락했다. 실험에 쓰이거나 전시되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의 평가가 가능하다. 이때 동물의 고통을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으며 축산업 등 인간의 착취적 활동으로부터 동물을 해방코자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다.⁷⁾

6) 김현민·김종우·이상준, 2022, “라이프스타일 운동과 사회운동의 접점 및 한계: 부산 비건 매핑운동 사례”, 『문화와 사회』, 30(3): 26-28면에서는 부산에서 비건 운동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통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7) 피터싱어, 2012, 『동물해방』, 김성한 옮김, 고양: 연암서가는 그러한 고전으로 꼽힌다. 오늘날 한국에서 동물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되었지만, 축산업, 실험동물법 등 동물을 이용하기 위한 법령을 통해 보호 범위가 축소된다. 이때 이용 자체의 문제를 배제하고 보더라도, 이용되는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체로서 존엄한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파충류, 양서류, 어류 동물은 식용 목적인 때에 동물보호법의 보호범위에서조차 처음부터 배제된다 (그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최정호, 2022, “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환경법연구』, 44(2): 305-332면을 참조).

이는 비거니즘이라는 윤리관 내지 세계관과 맞닿아 있다. 비거니즘에 대한 통용되는 정의는 아직 없으므로 그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권위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영국 비건협회(UK Vegan Society)의 개념정의를 따르자면, 비건은 “음식, 의복, 그밖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든 동물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을 가능하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선에서 배제하기를 추구하는 생활방식”을 말한다.⁸⁾ 비거니즘이 문제 삼는 근본 문제는 동물착취이지만, 그러한 단일쟁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경, 인권 등 함께 얽혀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연대하며 해법을 찾는 경향을 보인다(에바 하이파 지로, 2022: 257 이하). 동물착취와 그에 얽힌 인권이나 환경적 문제에 맞서는 비거니즘을 추구한다면, 채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윤리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의 식습관이나 건강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또한 채식이라는 섭식 태도는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

환경을 고려하여 채식하는 이들은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탄소배출과 그것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서처럼 육식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피하려 한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장식 축산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물학대와 더불어 탄소배출 문제가 대두된다(함태성, 2018: 250). 동물산업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열대우림 벌채와 같은 현재의 글로벌 위기의 주된 이유이며, 가축 사육은 전체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80%(전 세계 배출량 중 18%)라는 비판을 받는다(Stucki, S, 2022). 채식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에서는 반추동물의 높은 온실가스 집약도를 지적하며, 식물성 단백질의 비중을 높이고 동물성 식품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히 감축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토지사용량 및 주변

8) 해당 설명은 에바 하이파 지로, 2022, 『비거니즘』, 장한라 옮김, 부산: 호밀밭, 29면의 번역을 옮긴 것이다.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며, 식단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녹색기술센터, 2022: 86).

하지만 이상과 같은 채식의 계기나 이유는 서로 중첩되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⁹⁾ 따라서 이념형(Idealtyp)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우선, 환경을 위한 채식은 비거니즘이 단일쟁점 정치를 넘어설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쟁점이기도 하고, 동물이나 환경을 위한 활동은 결국 인간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물이 개체가 아닌 종 차원에서 다루어질 때는 환경의 문제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동물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는 서로 중첩될 수 있다. 그러나 비거니즘을 추구하지 않지만, 환경을 위한 채식을 실천하는 이들도 있으며, 비거니즘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채식이 아닌 실천, 예를 들어 동물실험 반대와 같은 것은 환경적 고려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며 이 연구에서는 동물권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태도를 특히 ‘윤리적 채식’으로 명명하여 이에 집중할 것이다. 동물이나 환경을 위한 채식은 뒤에 논하는 것과 같은 소수자성에 따른 구조적 부정의 문제라든가 비인간 존재에 대한 존중이나 관심을 인권의 언어로 풀어간다는 점에서 여타의 채식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2. 인권으로서 윤리적 채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청과 국가의 대응

최근 한국 사회에서 채식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¹⁰⁾ 그러

9) 또한 위 세 가지 중 하나가 주된 이유여도 그러한 구체적 주장을 들여다본다면, 가령 동물착취에 반대하지만 동물의 고통보다는 물질의 행위성에서부터 출발하는 식으로 출발점이 상이할 수 있다.

10) 위성곤 의원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채식인구는 2008년 약 15만명에서 2020년 약 150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한 경향을 반영하듯 미디어에서 채식은 전보다 더 자주 다뤄지고, 기업들은 채식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대학에서는 채식 동아리가 활동하거나 채식 식당을 운영하기도 한다. 서울 일부 상권에서는 채식 식당이 많이 몰린 곳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절대적인 프라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다시 말해, 전반적으로 보면 미디어에서 주로 육식을 다루고, 일부 제품을 제외하곤 모든 기업이 육식 제품을 내놓으며, 채식 동아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학 내 채식 식당은 얼마 못 가 문을 닫게 될 위험에 처하는 등 위태로운 지위에 있고, 서울에서도 특정 상권을 제외하면 채식 식당이 흔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심지어 비서울권으로 가면 그러한 곳은 거의 없다.¹¹⁾

이런 배경에서 채식을 권리로 주장하는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시작은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수용된 채식인이 교도소 내 채식 식단을 보장하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하며 법무부장관에게 합리적 식단 배려 등 처우를 권고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채식선택권 문제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0년 4월에는 녹색당과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침해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전부 각하되었다. 2020년에는 구치소 수용자가 채식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2021년 6월에는 시민단체·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 사건 모두 존중받아야 할 채식선택권과 관련한 문제임이 인정되었지만, 구체적 판단에서는 침해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고, 다만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변

에 따르면, 관련 단체들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식 인구는 지난 2020년 기준 약 200만 명 규모에 이른다.

11) 여기에 최근 식물기반 자본주의가 대두하고 라이프스타일 비건으로 축소되는 경향도 포착되는 등 혼란스런 양상이 나타난다.

화를 수용했다. 국방부는 2020년 군대 내 채식주의자·무슬림 대상 채식 급식을 도입했다. 국방부는 「2020년도 급식방침」에 채식주의 장병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대 사정을 고려하여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우유 대신 두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위에서 언급한 2019년의 인권위 진정은 각하되었다.¹²⁾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도 비슷한 노력이 있었다.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채식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 부산, 전북, 인천 등 각 교육청은 ‘채식의 날’이나 시범학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2021년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가 현 상태를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하는 이유로도 원용되었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중에는 서울대, 동국대, 삼육대, 중앙대, 경북대가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아가 2022년 2월에는 한 유력 대선후보가 ‘채식 급식 선택권 확대’를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해당 후보는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학생 누구든 마음 편하게, 균형 잡힌 채식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채식 급식 확대 및 채식선택권 보장을 공약했다. 또, 채식 식단 개발을 비롯한 관련 연구와 급식담당자의 전문적 연수를 시행하는 등 채식 급식 도입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2022년 11월에는 위성곤 의원 대표로 발의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482호)이 제출되었는데,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 및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국민의 채식선택권은 단순한 개인의 호불호 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건강권에서 비롯되는 헌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12) 12진정0521300. 군에서는 「2020년도 급식방침」에 채식주의 장병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외에 2020.12.22. 국방부가 급식배려병사 정책 포럼을 개최했고, 2021.2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신상명세서에 ‘채식주의자’를 표시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상의 흐름은 채식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공공급식이라는 제약된 형태의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채식 식단이 제공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상의 불편함을 더 이상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사소한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로써 공론장에 끌어들여 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화된 소비적 실천에 그치는 라이프스타일 정치를 넘어서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시민사회 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주장에 부응하여 국가는 채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내어놓거나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채식하는 것이 하나의 인권임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채식을 선택할 권리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이 다양한 인권들 가운데 어떤 인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인권 그 이상의 함의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가장 진중하게 사안을 다루며 나름의 논리를 전개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질문들을 풀어나간다.

III.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1. 개별 사건과 판단

(1) 1차 인권위 결정¹³⁾

1차 인권위 결정에서 진정인은 평화주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진정인은 개별 특성을 고려한 채식 위주의 음식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교도소장은 이를 불허하였다. 채식 식단 요청은

13) 2012.9.25. 11진정0699000.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취향에 불과한데,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교도소 여건상 까다로운 개별 취향에 맞는 음식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대신 피진정인은 폭넓은 재량권을 바탕으로 매 끼니에 제공되는 밥과 채소류 등 진정인이 선호하는 부식물의 양을 기준보다 많이 제공하는 등 배려하였고, 진정인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진정인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유사한 수용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면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진정인이 개인의 양심인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면서도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육식을 하지 않고 완전한 채식주의를 지향하는 것 또한 진정인의 양심에 속하고 이는 피진정인의 주장과는 달리 일반적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따른 개인의 취향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진정인의 채식주의에 대한 일관된 행동과 엄격한 수용생활 태도는 양심에 근거한 것 외에 달리 보기 어려우며 이는 헌법상 보장받을 기본권 보호범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헌법 제19조의 양심을 형성하는 자유와 대외적으로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교도소는 개인의 자유가 대폭 제한되어 있으므로, 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없이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규칙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는 공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별도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육식을 거부하는 진정인의 양심 실현의 자유를 침해함을 인정했다.

(2) 2차 인권위 결정¹⁴⁾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들

14) 2021.11.30. 21진정0391000·21진정0394100·21진정0394500·21진정0394600·21진정0401500·21진정0403500(병합).

은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완전한 채식 주의자인데, 학교에서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받지 못함으로써 불균형한 영양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까다로운 학생이라는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적대적인 환경에서 교육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며,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체계의 조속한 개선을 원한다며 교육부장관과 해당 시도교육청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진정을 제기 하였다.

채식선택제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으로 결정하여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되지 않을 뿐 당시에 운영할 수 있었다.¹⁵⁾ 교육부장관은 이 점을 언급하며, 종합적 여건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도입은 학교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신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마련한 ‘학생건강증진정책방향’ 행정지침을 통해 단위학교에

15)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09. 2. 25., 2021. 1. 29., 2022. 3. 22.>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서 급식 수요자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변화하는 학생 개인의 건강 문제, 가치관, 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급식 형태 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다른 피진정인들인 교육감들도 채식선택제에 기반을 둔 월 2회 이상 ‘그린(GREEN) 급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거나 주 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피진정인들에게,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식주의를 택하고 있는 아동이 그에 맞는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식단을 통해 적절한 양만큼 제공받는 등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첫째,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률은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에서 채식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는 재량사항에 해당한다는 점, 둘째, 맞춤형 교육급식, 그린 급식의 날, 채식의 날, 대체 식단 적용 시범 사업 등의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운영 중임이 확인되므로, 현재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향후 급식체계 개선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진정인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기각하였다. 한편 1차 인권위 결정과는 다른 결론에 이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개인의 자유가 대폭 제한됨으로써 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없이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 공간인 교정시설과 일선 학교 현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이 관계 당국의 별도 개선 노력 없이 장기화한다면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고 평가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고려에서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학교급식 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인권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준거로 판단하였다. 즉,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은 학교급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아동은 학교급식에서 자신에게 신념 또는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의 신념에 대한 존중과 환경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다.

(3) 3차 인권위 결정¹⁶⁾

가장 최근에 내려진 결정의 피해자는 신념에 따라 아주 어릴 때부터 일체의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비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구치소에 수용되었던 동안 주식인 현미밥을 제공받지 못해 사과를 먹으며 생활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영양실조로 인한 탈모와 체력 저하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피진정인 구치소장에게 주식인 현미밥 제공 또는 현미쌀 구매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조치는 채식주의자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어렵게 하여 피해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도 인권위는 기각 결정과 함께 의견표명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즉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심의 자유 나아가 건강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2022.3.11. 20진정064700.

는 의견을 표명했다.

기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현미쌀 구매 요청을 거절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었던 점, 현재 우리 교정 관련 법규에는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식인 사과 구매 횟수를 늘려주고 피해자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등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건강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의견표명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의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것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 삶은 피폐해지고, 건강까지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결국 자신의 소신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배치된다. 인권의식과 국제적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 논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해외기준과 국내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수용자도 이제는 자신의 신념 또는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음식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교정기관으로부터 영양학적으로 고려된 채식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런 채식선택권의 보장은 개인의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넘어 수용자들의 비만, 당뇨병, 심장병 등과 같은 건강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2. 인권위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채식선택권의 개념과 성격

위 사안은 교도소, 구치소와 초·중·등 교육기관에서의 단체급식을

배경으로 하며, 피해자들의 채식 유형은 평화주의 신념, 동물과 환경, 비거니즘을 바탕으로 한다. 각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육식주의¹⁷⁾ 식단이 제공되어 발생하는 불편을 인권침해로 이해한다. 인권위도 이에 부응하여 해당 인권을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로 포섭한다. 양심의 자유는 선악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장영수, 2022: 659). 양심의 자유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강제 등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양심형성의 자유, 나아가 그러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자유인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김하열, 2023: 431). 1차 인권위 결정은 채식을 요구하는 권리가 이에 포섭됨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볼 때, 윤리적 이유에서 실천하는 채식은 개인의 양심을 형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를 실현하는 권리, 특히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로서 양심적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 협약 제9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라는 표제 아래에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예배, 선교, 행사, 의식을 통해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공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유럽인권법원과 유럽인권위원회는 일관되고 진정성 있는 확고한 신념에 대해 이 협약 제9조 제1항을 적용하는데, 그중에는 ‘비거니즘과 동물성 또는 동물실험을 거친 물건의 조작성을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¹⁸⁾

17) 육식주의란 육식을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필수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는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멜라니 조이, 2021, 『우리는 왜 개를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노순욱 옮김, 서울: 모멘토, 52면 이하를 참조.

18) Council of Europe/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2, *Guide on Article 9 of the Convention -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그런데 인권위는 그러한 권리를 명명하는 데에 변화를 보인다. 1차 인권위 결정에서는 양심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다가 2차 및 3차 인권위 결정에서는 채식선택권이라는 고유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동시에 건강권도 언급하고 있어 채식선택권, 양심의 자유, 건강권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된다. 우선 두 결정에서 등장한 채식선택권이라는 이름은 양심의 자유의 구체적 유형으로 명명된 것일 수도 있고, 하나의 독자적 권리를 인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해당 인권위 결정에서 채식선택권에 대한 도출과정이 별도로 언급되지는 않으며 건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건강권은 윤리적 신념에 따른 채식을 선택할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불균형한 영양으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채식하는 수용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건강까지 잃을 가능성과 결국 자신의 소신마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언급한 3차 인권위 결정에서 특히 잘 나타난다.

따라서 인권위의 입장에 따를 때 채식선택권이란 채식 식단을 신념에 따라 지키고 그것을 요구할 권리로서 그 근거는 양심의 자유이다. 그리고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신념을 포기하거나 건강을 잃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에 건강권과도 관련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논지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진지한 주관적 가치가 얼마만큼 보호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공익적 가치에 의해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런데 적어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채식 식단 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는 마치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배려가 가능하고 필요

9-10 참조. “The organs of the Convention have explicitly or implicitly acknowledged that the safeguards of Article 9 § 1 of the Convention apply to: (...) (c) various coherent and sincerely-held philosophical convictions, such as: (...) veganism and opposition to the manipulation of products of animal origin or tested on animals (W. v. the United Kingdom, Commission decision of 10 February 1993)”

한 것보다도 같다. 게다가 윤리적 채식의 경우 그것을 통해 실현하려는 가치는 궁극적으로 동물보호와 환경보호와 같이 법적으로 승인된 공익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제한되기보다 가급적 국가가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한 건강 침해는 구체적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를 비롯하여 다수의 국제인권문서에서 말하는 건강권은 식량과 영양 등 건강의 기초적인 결정요소들을 포괄하며, 이 점은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건강권을 도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E/C.12/2000/4; para. 4; 김하열, 2023: 763). 그런데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한 건강 침해는 그 상황이 장기적일 때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자면, 교도소, 구치소, 군대와 같이 시설 내에 장기간 자유가 제약되는 곳에서는 그 위험이 현저하지만, 하루 한두 끼를 해결하는 학교는 건강권 문제가 덜하다.¹⁹⁾

윤리적 채식선택권을 이상과 같이 이해한다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되는 취향에 따른 식단 요구와는 결이 다르다. 먹는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는 영역으로서 일찍부터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인정했다.²⁰⁾ 이처럼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서 파악되는 취향으로서 채식선택권이라면, 이는 양심의 자유로 포섭되는 채식선택권과 달리 급식 사정에 따라 보다 쉽게 제한될 수 있고, 후술하는 것과 같은 소수자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19) 그럼에도 윤리적 채식인의 소수자성, 단체생활에서의 배제가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신체적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공공급식에서는 더 많은 존중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을 존중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공공급식에서 건강한 식단의 제공은 여전히 국가가 보장해야 할 영역이다.

20) 대법원 1994.3.8. 92누1728 판결.

(2) 채식선택권과 재량행위

사안들에서 채식 급식 제공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으며 재량에 맡겨져 있다. 즉, 1차 인권위 결정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을 조금 늘려 준 것이나 3차 인권위 결정에서 사과 구매 횟수를 늘려주고 피해자가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중심으로 제공한 것은 모두 교정당국이 재량범위 내에서 행한 배려였다. 그리고 2차 인권위 결정에서 주기적인 채식 급식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식단 구성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자유롭게 행사할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채식 식단의 제공이 명시적 근거 없는 배려거나 재량행위에 따른 가능성이어도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선택할 객관적 조건에 대한 위험은 인권위 결정 곳곳에서 파악된다. 우선 2차 인권위 결정에서는 1차 인권위 결정과 달리 진정을 기각하는 이유를 선택할 자유의 제약 정도에 따라 판단의 엄격성이 달라진다는 데에서 찾았다. 개인의 자유가 대폭 제한됨으로써 당국의 적극적 조치가 없이는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규칙에 따라야만 하는 공간인 교정시설과 일선 학교 현장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및 3차 인권위 결정에서 건강권을 함께 언급하는 취지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채식선택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리적 채식주의자는 신념을 포기하거나 불균형한 영양상태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내몰린다는 점에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배치된다.

그렇다면, 자유 제약 정도가 강한 교정시설이나 군대에서의 채식 급식 제공은 재량이어서 안 된다. 상대적으로 자유 제약이 덜했던 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나온다. 모든 학생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에서 월 1회에서 주 1회 제공되는 식의 조치는 윤리적 채식을 하는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기에 충분한 조치가 아

니다. 한 달 또는 일주일 중 하루를 제외한 모든 날은 밥 말고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정시설에서와 달리 학교에서는 급식 이외의 다른 음식을 준비해 와서 먹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급우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자체 학생의 존중감을 위축시킬 수 있다. 아동의 이익까지 고려한다면 교정시설과 학교에서의 제약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이 지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차 인권위 결정의 기각 이유 중, 충분히 채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 관계 당국의 별도 개선 노력 없이 장기화한다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아이리스 매리언 영(2017)의 구조적 부정의 비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에 따르면 부정의 상태를 규정하는 두 가지 사회 조건은 개인들의 자기 발전을 막는 제도적 제약으로서의 억압(oppression)과 개인들의 자기결정을 막는 제도적 제약으로서의 지배(domination)이다. 이때 지배란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결정할 때 참여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막는, 또는 행위 조건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금제하거나 막는 제도적 조건들을 말한다.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일방적으로 내가 행동할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면, 또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들의 행위가 누적되어 구조화된 결과로 인해 그들이 내 행동 조건을 간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나는 지배 구조 하에서 사는 셈이라고 한다. 이때 집단은 단순히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넘어서 정체성과 근본적으로 관련된다(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21) 한편 초등교육 등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 실질적 균등보장을 위한 무상교육을 일환이다(헌재 2021. 4. 24. 2010헌바164). 그런데 별도로 음식을 준비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방지하는 것은 무상급식이 달성하려는 취지와 달리 학부모나 학생 자신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운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건은 교육의 실질적 균등성도 저해할 수도 있다.

110).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동일한 사회에 소속된다고 여기면서도 각 무리마다 살아가는 방식과 결합의 형식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경험하고는 서로 조우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무리가 서로를 그리고 자신들을 집단이라고 인식하게 된다(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111). 사회적 관계와 과정으로부터 생겨난 집단의 차이는 집단 서로 간을 넘나드는 게 보통이다. 특히, 규모가 크고 복잡하고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사회집단 자체가 내적 동질성을 갖지 않는다. 각 사회집단 자체가 내부적으로 분화되면서 더 넓은 사회에 존재하는 타 집단들의 많은 점들이 그대로 집단 내부의 분화 속에서도 반영된다(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121).

영의 관점을 채택한다면, 우리는 비거니즘 등 윤리적 이유에서 채식하는 이들이 소수자의 처지에 놓이고, 그 결과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편견(2차 인권위 결정에서 피해자의 진정 이유)이나 무례한 질문과 훈계에 노출되고, 나아가 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받기도 하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채식선택권이 추상적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 현실에서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다양한 제도적 제약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단체급식의 설계에서 처음부터 채식인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은 인권침해로 보아 마땅한 상황이다. 이 점에서 진정인들이 학교급식 체계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한 2차 인권위 결정에서 전면적 개편은 실행 가능성 등 현장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인 현재에서는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은 기존의 지배를 강화하며 소수자로서 채식인의 목소리를 지워버린다. 제도적 설계에서부터 채식을 자유롭게 요구하여 양심에 따른 건강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으며, 그렇지 못한 현실은 이미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법령상 재량행위라는 사실에 지나치게 구속된 결정이라는 평가도 해볼 수 있다. 재량행위 규정은 양심의 자유로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제약으로서 작동한다.

인권위는 법률적 논리에만 구속되지 않고 인권적 판단을 하는 기관임을 고려하면 적극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²²⁾

IV. 윤리적 채식선택권의 재구성과 인권의 과제

1. 비인간에 대한 존중 요청으로서 채식선택권

채식선택권이 인권으로 승인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비거니즘에서 동물착취 반대나 환경을 이유로 하는 채식에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대응이라는 맥락은 주관적 동기로 여겨질 뿐이어서 개인의 신념과 선택에 관한 인권 문제에서는 그리 중요한 내용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2차와 3차 인권위 결정에서와 같이 이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유형의 윤리적 채식선택권을 온전히 이해해본다면, 기존의 인권과는 다른 독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통상의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로서 자유, 평등 그리고 자유로울 조건을 다루며 인간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다. 이후 인권은 이른바 제3세대 인권으로서 환경권을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이라는 도구적 가치의 자연을 고려에 넣었다(조효제, 2022: 189). 여기에서 더 나아가 윤리적 채식선택권은 비인간 존재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넘어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나아가 비인간 존재의 권리로서 동물권과 자연의 권리를 전제하는 가운데 기존과는 다른 유형의 인권으로서 ‘비인간의 권리를 위한 권리’를 주장한다.

22) 실제로 인권위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등에서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정도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이 이들 내용만 모두 고지했을 뿐 추가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적이 있다(2020.11.25. 19진정085720). 현실에서는 체포당한 자가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비거니즘에 바탕한 채식선택권을 주장하여 달성하려는 바는 채식 식단으로 먹겠다는 표면적 내용 자체에 있다기보다 비인간 존재의 권리로서 동물권 옹호에 중점이 놓여 있으며, 이때 채식은 비거니즘 실천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구조할 권리(Right to Rescue)’를 들 수 있다. DxE라는 동물권 단체는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을 그곳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공개구조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를 인간중심적인 재산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농장의 재산인 동물을 농장주의 동의 없이 데려오는 행위로서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이때 단체에서는 구조할 권리를 주장하며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와 같은 주장을 해보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주장한 온전한 형태는 아니었다라도 독일과 미국에서 종종 인정되어 무죄판결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곧 동물의 대변인 내지 보호자로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동물권을 위한 인권 주장에 속한다. 한편,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간의 활동이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는 주장(조효제, 2022: 211) 역시 마찬가지로 맥락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거니즘 등 윤리적 실천으로서 채식선택권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부모의 권리와도 비슷한 구조를 갖는다. 이것은 자녀라는 권리주체의 이익에 관련되는 부모의 권리로서, 보통의 인권이 자신을 위한 이익을 권리로 승인받는다든 것과는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그를 위해 부모가 행사하는 권리라는 구조를 짚는다. 이것은 자녀가 단순한 대상이 아니며 엄연한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마땅한 논리구성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닌 존재를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윤리적 채식선택권이나 구조할 권리와 구조가 같으며, 권리 주장자가 아닌 다른 존재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가 권리를 인정할 때의 참조점이 된다.

2. 인류세에서 성찰적 인권으로서 채식선택권

인권이나 기본권의 영역에서 자연의 권리와 동물의 권리를 언급하는 것은 인류세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일 것이다. 미세먼지, 팬데믹, 기후위기는 인권과 환경이 연계됨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인류세를 맞아 환경파괴와 인권파괴가 연계되는 등 인권 침해의 양상과 규모가 변했고, 마치 경제·사회적 권리를 경제발전과 성장을 통해 달성하려던 시도가 무한성장이라는 지속불가능한 패러다임을 경계하는 갈등에서처럼, 기존의 인권이론과 실천 방식으로는 인류세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조효제, 2022, 173). 요컨대 인권이 국가로부터의 억압에 대항에서 시작하면서 ‘국가중심주의’를 배격하고 개인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자연과 동물을 배제하는 인간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는 못했고, 오늘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한 것이다(조효제, 2022: 206).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무용해졌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과 자연적 존재로서 비인간을 나누던 근대의 이분법과 달리 실은 인간과 비인간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 얽힌 존재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상호작용해왔음을 인정한다면(브뤼노 라투르, 2009: 140), 인권은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때 인권은 비인간과의 관계적 맥락에서 권력 비대칭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그 구체적 내용을 재구성하여 인간-비인간 공동체가 승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계에서 마땅한 몫을 담은 새로운 권리의 승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은 이미 제시되고 있다. 오동석(2022)은 저항(권)의 연대로서 지구법학을 주장한다. 이는 자연의 권리를 순전한 이념이 아닌 현행의 법제도 안에서 설명하기 위한 시도이다. 토마스 베리가 처음 제안한 용어인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은 지구공동체를 살아가는 비인간 존재에게도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는 그의 독특한 우주론에 입각하고 있다.²³⁾ 문제는 자연의 권리를 승인하여 인간의 법체계 안에 명시하는 것은 자칫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에서 바라본 자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름만 ‘보호’에서 ‘권리’로 변경하는 간판 사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점이다. 결국 모든 권리는 구체적 현실에서 입법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제약된 형태로서 승인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이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동석은 인간의 권리나 제도로서 자연의 권리가 재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이 인간에 대해 가지는 저항권에 대한 연대라고 말한다. 그러한 연대를 위해 인간은 자신의 권리로서 자연을 대변하게 된다는 것이다(오동석, 2022: 86). 이러한 이해도 역시 인간의 법적 권리의 맥락에서 논의될 뿐 본질은 비인간 존재에 대한 존중과 그 권리의 승인에 있다. 인간과 비인간을 서로 관계 맺는 얽힌 존재로 이해하는 가운데 각자의 정당한 몫을 고려하며 더 나은 권리론을 향해 나아감에 있어 이러한 견해는 중요한 거점을 마련해준다. 이렇게 볼 때 공장식 축산 등 동물착취와 그것이 기후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과 자연에 부정의하며, 이때 동물과 자연의 저항권에 연대하는 권리로서 채식선택권은 인간-비인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실천 중 하나가 된다.²⁴⁾²⁵⁾

23) 이것의 자연법적이고 종교적인 색채는 세속화된 가이아를 주장한 브뤼노 라투르를 통해 현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Ji-Yeon Im and Yunho Seo, 2021: 220).

24) 이는 한국의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 상황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언젠가 착취적 관계를 극복한 이후에 지금과는 달라진 현실에서 그때의 인간-비인간이 상호인정 관계를 통해 승인하는 관계가 육식을 자연스럽게 여길지는 열린 물음이다.

25) 물론 매우 근본적인 물음으로 들어가면 육식은 먹이사슬이라는 자연의 질서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필자는 육식에 대한 거부가 순수한 개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착취적 상황에 대한 반성에서 요청된다고 본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바라보는 것으로 최정호,

3. 동물권이나 자연의 권리와 관계적 고찰이 남기는 과제

윤리적 채식선택권이 인간의 신념과 그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비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서 착취 반대, 인권과 자연의 또는 동물의 권리 사이의 관계 제고, 저항권에 대한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의 근본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우선 동물이나 자연을 대변하기 위한 권리 일반의 승인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인간의 권리인지 아니면 단순한 대리 권한과 같은 것인지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동물과 자연이 행위성을 가지며 주체로서 승인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때 동물과 자연을 위한 권리가 인권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 아니면 동물권과 자연의 권리를 승인함에 따라 인정되는 인간의 의무나 권한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맥락을 완전히 제거한 채 순전한 인간의 이익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충분한지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것은 인권학이나 법학에 주어진 과제가 될 것이다.

만약, 동물이나 자연을 대변하기 위한 인권이 인정된다면, 동물의 권리, 자연의 권리, 그리고 인간의 권리는 어떤 근거에서 출발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사실 인권도 하나의 권리로 접근하면 그 근거에 대해 의사설과 이익설이 대립하고 있다. 종종 주장되는 바에 따르면 이익설이 통설이며 자연의 권리도 이를 통해 정당화될 것이라고 한다(Linnea Luuppala, 2021: 125). 그러나 이때 이익은 자연이나 동물과 같은 비인간 존재의 이익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익설이 종래 의사설의 핵심인 자유의지를 부정한 이론은 아니기에(김현철, 2003: 422) 추가적인 논리 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의 근거라고 한다면, 동물이나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는 토대로서 존엄성이 마찬가지로

2022, “개 식용 산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30: 57면 참조.

지로 인정될 것인지, 그렇다면 이때 존엄성은 인간의 존엄에서와 같은 근거와 내용을 가질지 역시 문제로 떠오른다(서윤호, 2022: 249).

인권의 상호의존성은 동물권이나 자연의 권리와도 상호의존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단초는 이미 자연의 문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함께 고찰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는 자연의 권리 침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보고가 제시되고 있다(Anthony et al, 2021: 265).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에게도 좋다는 태도는 지금껏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였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현재 흐름에서는 자연을 존중해야 할 이유를 끝내 인간의 이익으로 환원할 뿐이어서 자연이 갖는 본연의 가치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인권의 상호의존성 확장을 뜻할 수도 있다.

V. 결론

이상의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식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한국 사회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향유할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족한 기반과 까다로운 취향 정도로 보는 편견 속에서 채식 식단을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는 채식선택권 내지 양심의 자유라는 이름의 권리로서 주장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청은 교정시설이나 초중등학교, 군대에서와 같은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채식 식단을 제공받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또는 헌법소원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육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은 이런 요청을 수용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나아가 유력 대선후보의 공약이나 국회의 법안을 통해서도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이 중 채식선택권을 가장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인권위의 결정이다. 인권위는 채식선택권을 양심을 형성하고 이를 실현할 개인의 인

권으로 인정한다. 처음에는 이를 양심의 자유로 표현하였지만 이후 채식선택권이라는 독자적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독자적 권리라기 보다는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이라고 풀이된다.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념을 포기하거나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을 섭취해야 하는 양자택일적 상황에 내몰리므로 이는 건강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그런데 인권위 결정은 윤리적 채식의 소수자성과 선택을 방해하는 구조적 부정의를 진지하게 다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심과 건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정기적이지만 간헐적인 채식 지원으로는 충분할 리 없으며, 교정시설보다는 자유가 덜 제약되는 학교에서도 별도의 음식을 직접 마련하여 먹는 행위가 아동의 이익에는 배치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면,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기각되지 말았어야 했다.

한편 비거니즘 등 윤리적 채식선택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채식은 자신의 윤리관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따라서 기존의 인권적 틀로서 개인의 선택권만 논하게 되면 인간과 동물 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추구하는 이들의 요청은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되기 쉽다. 인류세, 기후위기, 팬데믹 등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고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반성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인권은 자연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인간의 권리로 재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참작한다면 인권이 비인간 존재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지 또는 순전한 인간의 이익의 관점만을 계속해서 관찰할 것인지, 전자의 경우 그러한 인권의 근거, 동물 및 자연의 권리와 관계 등을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인권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2023. 5. 23, 논문심사일: 2023. 6. 12, 게재확정일: 2023. 6. 20)

참고문헌

- 김하열, 2023, 『헌법강의』 제5판, 서울: 박영사.
- 김현민·김종우·이상준, 2022, “라이프스타일 운동과 사회운동의 점점 및 한계: 부산 비건 매핑운동 사례”, 『문화와 사회』, 30(3): 7-62.
- 김현철, 2003, “권리에 관한 의사설과 이익설”, 『강원법학』, 16: 407-436.
- 멜라니 조이, 2021,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노순옥 옮김, 서울: 모멘토.
- 박지현, 2021, “채식·비건·비거니즘 법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 『환경법연구』, 43(2): 127-154.
- 박지현, 2023, “그린워싱·그린브러싱과 채식 - 채식·비건·비거니즘 법체계 연구 II -”, 『홍익법학』, 24(1): 751-779
- 브뤼노 라투르,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옮김, 서울: 갈무리.
- 서윤호, 2022, “포스트휴먼 사회에서의 인간존엄의 문제”, 『통일인문학』, 90: 227-254.
- 오동석, 2022, “인류세에서 기본권론”, 『헌법재판연구』, 9(1): 81-106.
- 에바 하이파 지로, 2022, 『비거니즘』, 장한라 옮김, 부산: 호밀밭.
- 아이리스 매리언 영, 2017, 『차이의 정치와 정의』, 김도균·조국 옮김, 서울: 모티브북.
- 장영수, 2022, 『헌법학』 제14판, 서울: 홍문사.
- 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과주: 창비.
- 최정호, 2022, “개 식용 산업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환경법과 정책』, 30: 55-89.
- 최정호, 2022, “동물보호법상 동물 개념에서 식용 목적인 어류 배제에 대한 비판”, 『환경법연구』, 44(2): 305-332.
- 피터 싱어, 2012, 『동물해방』, 김성한 옮김, 고양: 연암서가.
- 함태성, 2018, “농장동물 위해관리의 법적 쟁점과 과제”, 『환경법연구』, 40(1): 221-254.

- Anthony Zelle, Grant Wilson, Rachele Adam, Herman Greene, 2021, *Earth Law: Emerging Ecocentric Law— A Guide for Practitioners*, Wolters Kluwer.
- Council of Europe/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22, *Guide on Article 9 of the Convention -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 Linnea Luuppala, 2021, *Rights-Based Restoration*, Daniel P. Corrigan and Markku Oksanen (ed.), *Rights of Nature. a Re-Examination*, Routledge.
- Ji-Yeon Im and Yunho Seo, 2021, *GAIA AND EARTH JUSTICE: Earth as a Natureculture for 'Harmony with Nature'*, *Journal of Dharma* 46(2): 215-230.
- Stucki, S., Klimaschutz geht durch den Magen: Die Schweizer Massentierhaltungsinitiative und ihre klimapolitische Bedeutung, *VerfBlog*, 2022/9/13, <https://verfassungsblog.de/klimaschutz-geht-durch-den-magen/>, DOI: 10.17176/20220913-230313-0.

<Abstract>

**A right to vegan/ethical vegetarian meals in public facilities
and challenges to human rights**

CHOI, Jeong-Ho*

Although the number of vegans and vegetarians is growing, the basis for appreciating it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still a stigma that vegetarianism has a difficult flavor. In light of this reality, civil society has come to assert the desire to be provided with vegetarian meals as a human right, such as the right to choose vegetarian cuisine or freedom of conscience, in institutions that serve group meals, such as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chools.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related policies and preparing the ground in response.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vegan/vegetarian option is protected as an individual's right to form and follow a conscience. If the freedom to vegetarian options is not guaranteed, then individuals are forced to choose between their beliefs and their nutrition. Currently, the option of veganism/vegetarianism should generate interest in the conditions that can be selected, as opposed to leaving individual choice open.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minority of vegans and ethical vegetarians as well as the structural injustices that impede their choice.

Vegetarian meal is merely a means for those who insist on ethical

* Assistant Research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Bigdata COSS.
Ph.D in Law

vegetarian options such as veganism to practice their ethical beliefs. Consequently, if only the individual's choice is discussed as the current human rights framework, the request of those desir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animals or humans and nature is likely to be disregarded as a mere motive. The Anthropocene, climate crisis, and pandemic necessitate a fresh examination of the human-nature relationship and a reconsideration of the anthropocentric worldview. Currently, human rights can be reconstituted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nature and animals. Taking into account these efforts, whether human rights will represent non-human beings or whether only the perspective of purely human interests will continue to be pursued,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basis of such human rights, the relationship with animals and natural rights, etc., will be reexamined. There will be a requisite I believe thi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Keywords: a right to vegan/ethical vegetarian meals, freedom of conscience, veganism, vegan jurisprudence, animal rights, nature's rights, earth jurisprudence, structural injustice